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4. 10. 30.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 10. 22.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4. 10. 22.

다. 상정일자 : 제10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4. 10. 30)

상정, 심사, 가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김기석 지역경제과장)

가. 제안이유

- 현행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은 담보조건부로 되어 있어 담보능력이 부족한 관내 유망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자금대출을 받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담보없이도 신용보증을 통하여 편리하고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기금중 일부를 비영리재단법인인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우리구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안 제5조제1항)

- 1)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용자
 - 2) 중소기업 육성자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 3) 기타 기금의 관라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안 제5조제2항)
 - 특별신용보증 추천대상자를 기금운용심의회 의결사항으로 한다.
(안 제7조제1항제3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의 개정은 담보능력 부족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이 신용보증을 통하여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 중 일부를 비영리재단법인인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5조 기금의 용도에 “중소기업 육성자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과 안 제7조 제1항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사항에 “특별신용보증 추천대상자 선정”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특별시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 육성에관한법률(2004. 1. 16 법률 제7061호)제43조의 규정과 동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1993년7월 기금설치이후 2004년10월말 현재 7,431백만원(구출연금:5,350백만원, 증식이자:2,081백만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과 생산시설의 설비 및 구조개선 사업 등 운전 및 시설자금으로 186개 업체를 지원한 바 있음.

그러나 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결과 대출 지원업체로 확정되었으나 담보능력 부족으로 대출실행이 안된 업체가 2003년 : 10개업체→ 10억원 (대출확정 : 37개업체→ 35억원, 대출완료 : 27개업체→ 25억6천6백만원), 2004년(1,2차) : 10개업체→ 14억원 [대출확정(1,2차) : 22개업체→ 27억7천4백만원, 대출완료(1,2차) : 12개업체→ 13억6천만원] 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는 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은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능력부족으로 자금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줌으로써 산업 경쟁력 제고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정해원 위원) :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규모는?
- 답변요지(김기석 지역경제과장) : 2억원 정도 출연을 구상하고 있고 2억원 정도 출연하면 5배인 10억원까지 관내 중소기업에 신용대출이 가능함.
- 질의요지(박영길 위원) : 은행대출과 신용보증대출 비교시 중소기업이 편리한 대출방법은?
- 답변요지(김기석 지역경제과장) : 은행대출의 경우 담보능력이 부족하면 대출이 불가능하나 신용보증대출은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신용대출이 가능하여 은행대출방법을 보완하는 것임.
- 질의요지(윤동현 위원장) : 신용보증재단에서의 신용보증 평가방법은?
- 답변요지(김기석 지역경제과장) : 평가사 2명이 재무제표 등을 통해 검증하는 것임.
- 질의요지(이종일 위원) : 신용보증재단에의 출연은 주주로서의 참여 개념인가?
- 답변요지(김기석 지역경제과장) : 그런 개념임.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
|----------|--|

제출년월일 : 2004. 10.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현행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은 담보조건부인 바, 담보능력 부족으로 자금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담보없이도 신용보증을 통하여 편리하고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일부를 비영리재단법인인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우리 구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골자

가.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안 제5조제1항)

1.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용자
2.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나.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안 제5조2항)

다. 특별신용보증 추천대상자를 기금운용심의회 의결사항으로 한다.

(안 제7조제1항제3호)

3. 근거법령

- (1) 지방재정법 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 (2)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2004.1.16 법률 제7061호)

4. 조 례(안): 별첨

5. 예산조치: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연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2004. 9 .20 ~ 10. 11)결과, 의견제출 없음

나.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다.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의 용자
 2.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제1항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특별신용보증 추천대상자 선정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으로 융자하거나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p> | <p>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의 융자 2.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p>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p> |
| <p>제7조(기금운용심의회)① (생략)</p> <p>1.2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p> | <p>제7조(기금운용심의회)①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3. 특별신용보증 추천대상자 선정</p> <p>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p> |